

제 호

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 :

2. 대 표 자 :

3. 소 재 지 :

위 기관을 「발명진흥법」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지식재산처장

작 인